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 요지]

-진정인: 민변 TF 소속 변호사 5인

-피진정인: 국가정보원장, 통일부장관, 경찰청장

-진정취지

1)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의 집단입국 계획 하에 이 사건 피해자들(종업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국하게 되어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하였음을 확인하다.

2) 피진정인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들이 촬영된 사진과 신원 관련 사항을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이 사건 피해자들의 초상권,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확인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밖에 필요한 구제조치로서, ① 2016. 4.경 집단 입국 이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겪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일부 등 유관기관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심리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 ②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구제조치로서 복의 가족들과 상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법무부는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을 할 것, ④ 검찰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할 것, ⑤ 국가정보원은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한다.

[인권위 진정 관련 진행 경과]

2018. 2. 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접수

(2018. 5. 10. jtbc ‘스포츠라이트’ 보도)

2018. 7. 3. 진정인 의견서 접수

2018. 7. 4.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국가인권위원회 방문

2018. 7. 18. 민변 TF 및 시민사회대책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면담

2018. 7. 26.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결정

2019. 6. 26. 민변 TF 신속한 조사결과발표 촉구 성명발표

2019. 8. 26. 국제진상조사단, 국가인권위원회 면담

2019. 8. 28. 국제진상조사단, 중간보고서 발표

[인권위 결정의 요지]

주문

1. 국가정보원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시 헌법상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당사자의 의사를 직접 또는 명확히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수행 방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통일부장관에게,

가. 집단입국 사실 언론공표에 대해 그 과정과 문제점을 밝힐 것

나.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시 언론 비공개원칙을 엄수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이를 언론에 공표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와 사생활의 비밀 및 안전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3. 검찰총장에게,

가. 언론공표 및 동의 과정에 관여한 책임있는 자에 대해, 형법 제123조, 국가정보원법 제11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한다.

나. 탈북 종업원 집단입국 관련 고발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4.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5. 탈북 종업원 집단입국 과정에서의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 관련 진정인들의 주장은 기각한다.

[인권위 결정에 대한 분석]

1. 관련 기관(통일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군정보사령부 등)에서 이 사건의 진상 규명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만으로 이 사건의 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2018. 2. 진정을 제기한 후 1년 6개월 만에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임. 검찰은 고발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조사 추이를 살피고 있다고 하고, 인권위는 탈북 종업원 집단입국 과정에서의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 관련 주장을 기각하여,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에 대한 책임 있는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점을 확인함.

2. 그동안 통일부, 경찰청, 국가정보원에 이 사건의 진상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구체적인 의사가 확인된 바가 없었음. 인권위 조사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통일부, 경찰청, 국군정보사령부 등 관련 기관과 종업원 중 일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실제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었던 최초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언론공표 부분에 관해서는 국군정보사령부, 국가정보원(전 국가정보원장 포함), 통일부(전 통일부장관 포함)의 각 담당자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조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었음. 국군정보사령부에서 이 사건의 발단 과정부터 깊숙이 개입하여있다는 점을 확인함. 구체적인 판단 내용에 대한 입장은 아래와 같음.

3. 국가정보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 관련

입국 과정에서 국군정보사령부 담당 직원의 협박 및 회유 등 위법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지배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 담당 직원의 주장을 명확히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기록은 일부만 있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삭제되거나 멸실¹⁾되어

1) 지배인과 담당 직원간 통화녹음 파일은, 입국 이후 담당 직원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이를 백업할 시간이 없었고, 담당 직원의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어 휴대전화를 파괴하고

확인이 어려움. 지배인과 종업원들의 입국과정에서 국가 정보기관에 의한 강요와 위법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진정인과 지배인의 주장은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함.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과 같이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는 기관이 아님. 조사과정에서 국군정보사령부 담당 직원과 지배인의 통화녹음 파일이 보존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멸실 되었다는 사정을 확인했다면, 이 사건에 국군정보사령부가 개입하여왔다는 점, 국군정보사령부의 업무수행의 밀행성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오히려 정보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사정으로 보아야 했음.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기관이 국군정보사령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조차 없었음. 적극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면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거나 국군정보사령부 등 관련 기관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등 입장을 표명해야 했음.

더욱이 조사 과정에서 국군정보사령부 담당 직원이 지배인과의 통화를 녹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관하지 않았고, 녹음파일이 담긴 휴대폰을 한강에 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이는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사정을 입국과정의 위법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봄. 이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해야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기본적인 역할을 망각한 결과라 할 것임.

4. 자의입국여부 및 의사확인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5명의 종업원을 직접 대면 조사하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작성한 조사기록 확인서 등 자료를 확인하여 자의에 따라 입국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7명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

한강에 버려 파일을 보관할 수 없었으며, 대포폰이어서 통화내역 확인이 어렵다고 함.

지 않았다는 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작성된 진술서 기재 내용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에서 조사받은 종업원들과 그렇지 않은 종업원들의 의사를 나누어 판단함. 그리고 국군정보사령부에서 종업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배인을 통해서만 의사확인을 한 행위는 직무상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함.

그러나 이미 확보된 진술만을 살피더라도, 이 사건 종업원들이 중국 류경식당을 떠나 3일 만에 입국하게 되었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 외에는 안전하게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던 과정, 그리고 입국 이후에 곧바로 입국 사실과 자신들의 신원이 공개된 상황에서 종업원 전원이 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나서거나 국가인권위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사정, 이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나는 시간동안, 이 사건을 조사한 유일한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특수성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부당한 결과라고 할 것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전인 2018. 5.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일부 종업원들의 육성 증언이 보도됨. 또한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일부 종업원들의 면담 과정에서 자의에 의한 입국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키타나 보고관 또한 면담 내용을 반영하여 정부에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하였음. 충분히 존재하는 증거는 외면한 채 일부 종업원들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2016. 4. 5.경 한국으로의 입국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자의에 의한 입국이라고 판단한 것은 심히 부당함.

또한 위와 같이 자의에 의한 입국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만을 지적한 것은 자칫 ‘자의 여부’를 어떻게 보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기관에서 직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만 거치면 그 업무가 정당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음.

5. 입국 사실 언론공표 및 동의절차 관련

종업원들의 동의 없이 북한이탈주민센터 입소 당시 사진을 촬영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로 보도자료안을 만들었다는 점, 국가정보원이 통일부에 언론공개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전달하였다는 점, 이에 따라 2016. 4. 8. 브리핑을 실시하였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함. 종업원들에게는 언론에 공표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다른 이유를 들어 동의서의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도록 함. 국가인권위는 언론공표는 목적의 정당성, 침해의 최소성, 수단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모두 갖추지 못하여 종업원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함. 그러나 이를 통해 당시 20대 총선에 개입하고자 했다는 점은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봄.

언론공표과정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군정보사령부, 국가정보원이 순차적으로 개입하여 당사자들을 기망하고 동의 없이 사진촬영 및 언론공표가 이루어졌고, 이는 언론공표 과정 이전에 입국 과정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공표과정에 대해서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있음.

6. 자의에 의한 입국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입국 과정에 대한 정보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른 어떠한 고려도 없이 진상을 밝혀 이 사건으로 인한 종업원들의 피해 사실,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기대했던 최소한의 역할도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보여줌.

[인권위 결정 및 과정에 대한 평가]

○ ‘인권감수성 원칙’ 버리고 종업원 인권 침해한 국가인권위원회

-어제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핵심은 ‘성인지감수성’ /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증언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시 하는 ‘인권감수성’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관/ 인권위는 JTBC의 협조로 여종업원 5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 하지만 조사 첫 단계부터 남성 조사관을 배치하고, 동의 없이 대질 심문을 시도하는 등 마치 범죄 피의자를 취조하는 식의 조사를 진행하는 등 다수의 문제 발생/ 이에 민변 여성 변호사가 동석하여 종업원들의 조사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각고의 노력 펼쳐/ 하지만 인권위는 이번이 마지막 조사라고 둘러대며 수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에 대해 반복적인 조사를 벌였고, 이에 종업원들은 큰 고통을 호소한 바 있음

-여 종업원들은 JTBC 인터뷰에서 인권위 조사에 이르기까지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 아님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음 하지만 인권위는 ‘인권감수성’ 원칙을 무시하고 이들의 증언에 부합하는 물증이 없다며 기각 결정 내렸음/ 더구나 인권위는 국정원과 정보사가 휴대폰, 이메일 등 다수의 물증을 파기해 명확한 물증이 없다면서도, 종업원 대다수가 한국행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비약적인 결론을 내림으로써 자기 모순적 오류를 범해

-결과적으로 결정적 증거인 종업원들의 증언을 묵살하고, 물증도 없이 사건을 왜곡, 이 사건으로 인생이 뒤바뀐 여 종업원들의 인권을 재차 침해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과오를 범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획탈북이 아니다가 아니라 증거인멸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검찰의 강제수사를 신속히 요청하였어야 했음/ 기획탈북의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였으니 수사로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는 것이므로, 한참 뒤늦은 결정문에서라도 검찰의 신속한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결론을 냈어야 함/ 그런데 이에 대해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진정을 기각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에 대하여 향후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하겠음

[인권위에 대한 질문과 향후 대응계획]

1.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인권침해조사국의 조사과정과 조사완료 시점, 침해구제제2위원회 심의과정과 심의완료 시점 및 결정문 작성 완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비독립적,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는 점을 해명하기 바랍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집단입국 과정에 위법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하였는 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조사한 피해자 2, 3, 4, 5, 6,의 강제납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권감수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뢰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밝히기 바랍니다.

3. 국가인권위는 입국과정에서 정보사령부 담당직원의 협박 및 회유 등 위법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지배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다른 측면에서 정보사령부 담당직원이 지배인과 중요내용을 통화했던 통화녹음 파일을 보호센터에 수차례 방문하는 등 백업할 시간이 없었고, 국가정보원 군조정팀장의 지시로 휴대전화기를 파괴하고 한강에 버려 보관할 수 없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객관적 증거가 멸실되었다고 판단하였는 바, 국가정보원과 정보사령부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검찰에 강제수사를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에 더욱이 2018년 6월 고소까지 된 기획탈북 범죄혐의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이송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기 바랍니다.

민변 TF는 향후 검찰 추가 고소, 유엔 진행 절차 등에 결정문 중 지배인과 피해자 5인 피해진술 제출, 국가인권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그리고 국제진상조사단이 긴급하게 남북 가족들의 만남을 호소하는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오는 경우 이를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고, 국가인권위 결정까지

반영한 국제진상조사단의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어 유엔 인권이사회에 9월말
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